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

제2594호

2019.11.29(금)

발행인 : 서초구청장 조은희

편집인 : 홍보담당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전 화 : 02)2155-6253

구 보

◆ 차 례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2019-708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2019-709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 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225호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면없음>

공												
람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서 초 구

※ 이 구보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seocho.go.kr>-공개행정-서초전자구보)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19년 11월 29일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2019-7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538	1,014	26	138	360
정무직 계	1	1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530	1,008	24	138	360
3급 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8	6	1	1	
행정·기술	7	6	1		
기술(개방형)	1			1	
5급 소계	64	33	1	12	18
행정	32	16			16
행정(개방형)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6	4			2
시설(토목)	3	3			
행정·시설(건축)	2	2			
시설(지적)	1	1			
행정·토목·방재안전	1	1			
행정·녹지	1	1			
행정·시설(토목·건축)	1	1			
행정·별정	1		1		
행정·공업(화공)·보건	1	1			
행정·보건	1			1	
의무	8			8	
행정·의무·약무·보건	1			1	
의무·약무	1			1	
의무·보건·간호·약무	1			1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6급 소계	316	225	5	31	55
행정	184	126	3	8	47
시설	3	3			
행정·방송통신(통신기술)	1	1			
행정·세무	1	1			
세무	24	24			
행정·사회복지	16	9			7
속기	1		1		
행정·환경·공업(화공)·보건	1	1			
행정·녹지	4	4			
행정·농업(농업·축산)	1	1			
행정·농업(농업)	1	1			
행정·시설(교통시설)·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시설(토목)	6	6			
시설(건축)	3	3			
시설(지적)	2	2			
공업(전기)	5	5			
공업(전기)·시설(토목)	1	1			
행정·녹지·시설(건축)	1	1			
행정·공업(기계)	1	1			
행정·별정	1		1		
행정·전산	2	2			
행정·시설(지적)	1	1			
행정·수의·보건	1			1	
행정·시설(건축)	8	8			
행정·시설(토목)	7	7			
행정·공업(화공·기계)	1	1			
농업(축산)·수의	1	1			
보건·공업(화공)·환경	2	2			
약무	2			2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간호	5			5	
의료기술(임상병리, 방사선)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시설관리	2	2			
방호(경비)	1	1			
간호·보건	7			7	
행정·약무·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진료	3			3	
전기운영(전기운영)	2	2			
기계운영(기계운영)	2	2			
운전	6	4		1	1
7급 소계	470	332	10	31	97
행정	252	162	6	5	79
시설	5	5			
세무	35	35			
사회복지	33	18			15
속기	3		3		
공업(기계·전기)	3	3			
공업(화공)	2	2			
식품위생	1	1			
녹지	7	7			
보건	7	3		4	
시설(토목·건축)	18	18			
시설(지적)	7	7			
공업(전기)	4	4			
환경	1	1			
녹지·시설(건축)	1	1			
행정·전산	3	3			
시설(토목)	5	5			
시설(건축)	11	11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방송통신(통신기술)	4	4			
약무	3			3	
수의	1			1	
간호	17			17	
의료기술	1			1	
전기운영(전기운영)	2	2			
기계운영(기계운영)	4	4			
기계운영(영사운영)	1	1			
운전	23	19	1		3
사무운영(워드운영)	4	4			
사무운영(필기운영)	3	3			
시설관리	6	6			
방호(방호)	1	1			
방호(경비)	2	2			
8급 소계	439	290	4	50	95
행정	209	133	3	5	68
세무	39	39			
사회복지	44	24			20
공업(기계·전기)	2	2			
공업(화공)	1	1			
농업	1	1			
녹지	9	9			
보건	8	1		7	
시설(토목·건축)	13	13			
방재안전	1	1			
시설(지적)	5	5			
녹지·시설(건축)	2	2			
시설(토목)	6	6			
공업(기계·화공)	1	1			
시설(토목)·공업(기계)	1	1			
행정·시설(토목)	1	1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시설(건축)	4	4			
환경	3	3			
공업(기계)	1	1			
방송통신(통신기술)	6	6			
행정·전산	3	3			
공업(전기)	4	4			
간호	22			22	
의료기술	12			12	
식품위생	2			2	
전기운영(전기운영)	1	1			
기계운영(기계운영)	2	2			
운전	14	8	1	1	4
사무운영(워드운영)	1	1			
사무운영(필기운영)	1	1			
시설관리	19	15		1	3
시설	1	1			
9급 소계	230	119	3	13	95
행정	57	23	1	3	30
세무	20	20			
사회복지	64	6			58
공업(기계·전기)	2	2			
보건	3	1		2	
시설(토목·건축)	13	13			
방재안전	1	1			
시설(지적)	4	4			
환경	1	1			
공업(전기)	3	3			
행정·전산	1	1			
공업(화공)	2	2			
녹지	3	3			
보건·의료기술	3			3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농업·시설(토목)	1	1			
시설	2	2			
전기운영(전기운영)	3	2		1	
운전	17	8		2	7
농림운영(원예운영)	1	1			
사무운영(워드운영)	5	5			
사무운영(필기운영)	9	8	1		
사무운영(계리운영)	1	1			
시설관리	10	7	1	2	
방호(경비)	4	4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직위군)	2	2			
화생방	1	1			
화생방관리원	1	1			
별정직 계	7	5	2		
5급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전문위원	1		1		
6급상당 소계	1	0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3			
비서	3	3			
9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구의 회사 무국	보건 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구의 회사 무국	보건 소	동
총 계	1,491	981	26	124	360	총 계	1,538	1,014	26	138	360
일반직 계	1,483	975	24	124	360	일반직 계	1,530	1,008	24	138	360
6급 소계	308	222	4	29	53	6급 소계	316	225	5	31	55
행정·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22	22				세무	24	24			
행정·사회복지	15	10			5	행정·사회복지	16	9			7
<신 설>	0		0			속기	1		1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2	2			
간호·보건	5			5		간호·보건	7			7	
운전	5	3		1	1	운전	6	4		1	1
위생	0			0		<삭 제>					
7급 소계	465	328	11	31	95	7급 소계	470	332	10	31	97
세무	29	29				세무	35	35			
사회복지	27	14			13	사회복지	33	18			15
속기	4		4			속기	3		3		
통신(통신기술)	4	4				방송통신(통신기술)	4	4			
전기운영(전기운영)	3	3				전기운영(전기운영)	2	2			
기계운영(기계운영)	5	5				기계운영(기계운영)	4	4			
운전	24	20	1		3	운전	23	19	1		3
시설관리	9	9				시설관리	6	6			
8급 소계	410	273	4	40	93	8급 소계	439	290	4	50	95
사회복지	34	16			18	사회복지	44	24			20
복지	7	7				복지	9	9			
<신 설>	0	0				방재안전	1	1			
시설(건축)	3	3				시설(건축)	4	4			
통신(통신기술)	5	5				방송통신(통신기술)	6	6			
간호	12			12		간호	22			22	
전기운영(전기운영)	2	2				전기운영(전기운영)	1	1			
시설관리	14	10		1	3	시설관리	19	15		1	3
방호(경비)	0	0				<삭 제>					
9급 소계	225	110	3	11	101	9급 소계	230	119	3	13	95
세무	12	12				세무	20	20			
사회복지	74	10			64	사회복지	64	6			58
공업(기계·전기)	1	1				공업(기계·전기)	2	2			
시설(토목·건축)	11	11				시설(토목·건축)	13	13			
시설(지적)	3	3				시설(지적)	4	4			
<신 설>	0	0				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3			3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직위군)	2	2				나군(직위군)	2	2			
부차동지도	0	0				<삭 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 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19년 11월 29일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2019-7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를 “제32조”로, “상담 요청”을 “상담을 요청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는데도”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로, “때”를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또는”을 “제1항이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로, “으로”를 “으로 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자”로 하며, 같은 항 제 11호(종전의 제8호) 중 “정한 자”를 “판단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7. 금전거래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제2항 중 “구청장이나”를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4조로 하며,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를 제32조로 하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며,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1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 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2조)제7항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로,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5조) 중 “금품등의 수수”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상당한 후 처리”를 “상담”으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이 사법기관이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7조) 중 “제26조제4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8조)제2항 중 “반환하거나”를 “공무원 자신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으로 하여금”으로, “밝히거나 밝히도록”을 “밝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 반환”을 “그 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도하여야”를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행동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절차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1호의2 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신 고 자
서초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상담 요청	2. ----- ----- 제32조----- ----- ----- 상담을 요청함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 --- 때에는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	③ 제1항이나 ----- -----

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 6. (생략)

<신설>

-----.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

-----으로 구청장에게 --. -

-----.

1. ~ 6. (현행과 같음)

7. 금전거래가 있어 공정한 직

7. 구의 퇴직공무원(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이하 “퇴직자”라 한다)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
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
무관련자인 경우

<신 설>

<신 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

자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
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최근 2년 이내에 인가·
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
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
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자

11. -----
----- 판단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
자인 경우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직
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
상이 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
무원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
우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
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
구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되는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
구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청
장이나 상담을 한 -----

-----.

제21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생 략)
③ 제22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
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
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
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
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
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
하는 행위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4조-----

-----.

당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④ ~ ⑥ (생략)

<신설>

1. ~ 8.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

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

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

·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독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

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
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
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
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
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
1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피감기
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
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⑥ (생략)
⑦ 공무원은 초과사례금을 반
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생략)

제23조 · 제24조 (생략)

제2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
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
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
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
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
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
----- 첨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
면으로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 · 제26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직무권한 등
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
구-----
----- 상담

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
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 행위의 신고 및 확
인)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7조(징계 등)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
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해
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
고 및 처리) ① (생 략)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

제28조(위반 행위의 신고 및 확
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이 사법기관이나 감
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
사·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
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
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
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징계 등) 제28조제4항--

-----.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
고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
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
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
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
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
품등을 반환한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따라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
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⑥ (생략)

<신설>

----- 공무원 자신이 반환하
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으로 하여금 -- 밝
히도록 -----.

③ -----

----- 그
반환 -----
-----.

④ -----

----- 인도하거나 인
도하도록 하여야 -----.

1.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
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

<신 설>

행할 수 있다.

제31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29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
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
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
용할 때 이 규칙에 대한 교육
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생 략)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
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
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225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9호(2004.12.27.)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3호(2017.4.27.)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2호(2017.6.1.)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57호(2017.6.8.)로 (경미한)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24호(2018.10.11.)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239호(2018.10.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18호(2018.12.27.)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16호(2019.01.17.) (경미한)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61호(2019.04.04.) (경미한)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107호(2019.06.05.) (경미한)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177호(2019.09.19.)로 고시한 바 있는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주택법」(법률 제6916호)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부칙 제5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경미한)변경 지정(결정) 및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서 초 구 청 장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울특별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다. 면적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반포 아파트지구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1,548,924.7	-	1,548,924.7	

2. 주요 변경내용(반포아파트지구 1주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가. ‘기부채납되는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은 당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상정안

(‘17.2.21)과 같이 대지를 분할하여 각각 서초구와 서울특별시 소유권(관리청)을 구분’
 하라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알림(공동주택과
 -14444(2019.08.20.)호)에 따라 문화시설과 공공청사를 획지 분리하여 결정
 나. 201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건 및 협의결과를 반영한
 세대수 계획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3.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1) 지구 면적표 : 변경

(단위 : m²)

구분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변경 전	1,548,924.7m ²	238,494.9m ²	388,886.8m ²	921,547.0m ²
변경 후	1,548,924.7m ²	238,494.9m ²	388,886.8m ²	921,547.0m ²
비고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면적(m ²)	비율 (%)	면적(m ²)	비율 (%)	
합계		1,548,929.70	100.0	1,548,929.70	100.0	변경 없음
주거 용지	소계	937,421.69	60.5	937,421.69	60.5	변경 없음
	주택용지	937,421.69	60.5	937,421.69	60.5	변경 없음
중심 시설 용지	소계	96,005.50	6.2	96,005.50	6.2	변경 없음
	지구중심	37,698.50	2.4	37,698.50	2.4	변경 없음
	지구중심	23,965.80	1.6	23,965.80	1.6	변경 없음
	분구중심	34,341.20	2.2	34,341.20	2.2	변경 없음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487,464.31	31.5	487,464.31	31.5	변경 없음
	도로용지	228,610.00	14.7	228,610.00	14.8	변경 없음
	공원용지	59,459.17	3.8	59,459.17	3.9	변경 없음
	녹 지	68,713.04	4.5	68,713.04	4.4	변경 없음
	광 장	972.90	0.1	972.90	0.1	변경 없음
	학교용지	118,440.70	7.7	118,440.70	7.6	변경 없음
	공공청사	11,268.50	0.7	8,944.40	0.6	감)2,324.1m ²
	문화시설	-	-	2,324.10	0.1	증)2,324.1m ²
기타	소계	28,038.20	1.8	28,038.20	1.8	변경 없음
	종교용지	10,849.30	0.7	10,849.30	0.7	변경 없음
	문화시설 (비도시계획시설)	4,012.00	0.3	4,012.00	0.3	변경 없음
	학교(폐지)	13,176.90	0.8	13,176.90	0.8	변경 없음

나)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 변경

- 1지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238,495.9	100.0	238,495.9	100.0	변경 없음
주거 용지	소계	127,680.5	53.3	127,680.5	53.5	변경 없음
	주택용지	127,680.5	53.3	127,680.5	53.5	변경 없음
중심 시설 용지	소계	15,815.6	6.6	15,815.6	6.6	변경 없음
	지구중심	-	-	-	-	변경 없음
	지구중심	8,445.2	3.5	8,445.2	3.5	변경 없음
	분구중심	7,370.4	3.1	7,370.4	3.1	변경 없음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89,952.5	38.0	89,952.5	37.8	변경 없음
	도로용지	25,724.4	10.8	25,724.4	10.8	변경 없음
	공원용지	8,127.4	3.4	8,127.4	3.4	변경 없음
	녹 지	12,847.7	5.6	12,847.7	5.4	변경 없음
	학교용지	39,167.0	16.5	39,167.0	16.5	변경 없음
	공공청사	4,086.0	1.7	1,761.9	0.7	감)2,324.1㎡
기타	소계	5,047.3	2.1	5,047.3	2.1	변경 없음
	종교용지	5,047.3	2.1	5,047.3	2.1	증)2,324.1㎡

- 2지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 3지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나. 건축물 규제사항 : 변경없음

- 1) 용도규제 : 변경없음
- 2) 건축선의 지정 : 변경 없음
- 3) 건폐율 규제 : 변경 없음
- 4) 용적률 규제 : 변경 없음
- 5) 세대밀도 : 변경 없음
- 6) 건축물의 높이 : 변경 없음
- 7)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변경 없음
- 8) 주택용지안의 녹지규제 : 변경 없음
- 9) 주택규모규제(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 : 변경 없음

다. 중심시설 및 기타 건축물 계획 : 변경 없음

- 1) 지구중심 : 변경 없음
- 2) 지구중심 : 변경 없음
- 3) 지구중심 : 변경 없음
- 4) 기타건축물 : 변경 없음

라.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마. 경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바. 기존건축물 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사. 사업시행계획 : 변경 없음

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168,472.6	-	168,472.6	

나. 정비계획 변경 내용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분	명 칭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8,472.6	-	168,472.6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67,098.9	-	167,098.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73.7	-	1,373.7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68,472.6	-	168,472.6	100.0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36,713.3	-	36,713.3	21.8	-
	도로용지	19,926.5	-	19,926.5	11.8	-
	공원용지	3,939.1	-	3,939.1	2.3	-
	녹 지	12,847.7	-	12,847.7	7.7	-
획지	소 계	131,759.3	-	131,759.3	78.2	-
	주택용지	119,799.8	-	119,799.8	71.1	-
	분구중심	7,370.4	-	7,370.4	4.4	-
	주구중심	1,053.7	-	1,053.7	0.6	-
	공공청사	3,535.4	감)2,324.1	1,211.3	0.7	201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된 내용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분할
	문화시설	-	증)2,324.1	2,324.1	1.4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가정	광로	3	35	40~44	주간선 도로	6,600 (483)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북단)	일반 도로	-	2010.04.22	지하도로1(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면적:322.5㎡)
가정	대로	2	29	30	주간선 도로	3,500 (123)	서초구 반포동 (이수교차로)	서초구 반포동 (강남대로)	일반 도로	-	1984.11.07	지하도로3(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면적:228.9㎡)
가정	중로	1	468	20	집산 도로	475 (475)	반포동 1-21	반포동 116-1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가정	중로	1		20	특수 도로	103 (103)	반포동 1-13	반포동 115-2	지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2호 (2017.06.01.)	지하도로1(지하공공보도시설) 광로3-35(322.5㎡), 소공원5(1,604.5㎡), 완충녹지① (53.8㎡→76.6㎡)와 중복결정
가정	중로	1		10	특수 도로	92 (92)	반포동 115-4	반포동 115-6	지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2호 (2017.06.01.)	지하도로2(지하공공보도시설) 완충녹지①(309.5㎡)와 중복결정.
가정	소로	3		7.5	특수 도로	17 (17)	반포동 1-11	반포동 1-12	지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2호 (2017.06.01.)	지하도로3(지하공공보도시설) 대로2-29(228.9㎡)와 중복결정, 일부구간(185.9㎡) 입체적결정

※ ()는 구역 내 사항임

※ 폭원은 도시계획시설 외부폭원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 지하도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내용	최초결정일	비고
가정	a	도로 (지하도로)	반포동1-11 일대	면적(㎡)	185.9	-	-
				길이(m)	4.0~17.6		
				폭(m)	4.6~7.7		
				높이 (m,해수면기준+)	0.6~15.4		
세부사항	• 압체결정 범위 -지상부 : A=127.7㎡, H=해수면기준(+)11.0m~15.4m -지하부 : A=185.9㎡, H=해수면기준(+)0.6m~11.0m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㉔	1-1	소공원	반포동 1-1	3,939.1	-	3,939.1	서고시 제2004-419호 (2004.12.27.)	-지하도로1(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1,604.5㎡)

- 녹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㉑	녹지	완충 녹지	반포동 115-4	12,847.7	-	12,847.7	-	-지하도로1(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76.6㎡) -지하도로2(지하공공보도시설) 중복결정(309.5㎡)

※ 완충녹지 규모 축소(폭2미터) 구간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후에도 당초 식재계획을 그대로 유지하여 완충 녹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의 협약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참조: 서울특별시 조경과-13380(2018.10.09.)호-29p)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 공공청사 : 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③	공공 청사	공공 청사	반포동 1-19 일대	3,535.4	감) 2,324.1	1,211.3	서고시 제2017-153호 (2017.4.27.)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5층이하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공공청사	• 면적 변경 3,535.4㎡ → 1,211.3㎡ (감 2,324.1㎡)	• 201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의 결된 내용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분할

- 문화시설 : 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①	문화 시설	문화 시설	반포동 1-19 일대	3,535.4	감) 1,211.3	2,324.1	서고시 제2017-153호 (2017.4.27.)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5층이하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문화시설	• 면적 변경 3,535.4㎡ → 2,324.1㎡ (감 1,211.3㎡)	• 201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된 • 내용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분할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분		기준근거	기준 (㎡)	계획(㎡)		비고
				기정	변경	
부대 시설	관리 사무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 50)×0.05㎡ 이상 확보 • 그면적 100㎡ 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100.0㎡ 이상	226.6㎡	233.38㎡	
주민 공동 시설	총괄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에 세대당 2 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에 1.25배한 면적 • 포함시설 (500세대 이상의 경우)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8,100㎡ 이상	14,967.1㎡	25,432.96㎡	주민공동 시설 (건축물) 전체면적

	도서관					
경로당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500㎡ 이상	500㎡ 이상	526.5㎡	872.25㎡	-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725㎡ 이상	725㎡ 이상	3,625.0㎡	2,631.60㎡	200인 (1개소) 300인 (1개소)	
작은 도서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1,500세대 이상의 경우, 298㎡ 이상	298㎡ 이상	1,437.0㎡	3,286.53㎡	지상, 지하	
기타 주민 공동시설	-	-	4,951.5㎡	10,355.01㎡	공공개방 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살내 운동시설 (피트니스)	-	-	4,427.1㎡	8,287.57㎡		
주민 공동시설 (실외)	어린이 놀이터	-	2,593㎡ 이상	2,600.0㎡	2,595.20㎡	옥외
	주민 운동시설	-	-	2,200.0㎡	748.50㎡	옥외

※ 공공개방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로 계획

※ 2019년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되었으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련 규정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조정될 수 있음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반포 3차-경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68,472.6			반포동 1-1번지 일원	32	-	-	32		

나)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확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 한		
				가정	변경								
변경	신반포 3차-경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68,467.6	A-1	119,230.8	119,799.8	반포동 1-1 일대	주택 용지	20 이하	230 이하	281.34 이하	299.95 이하	110m이하 / 35층이하 (한강연접 첫 주동 높이 48m 이하 / 10-15층이하 (피로티 포함))	-
			B-1	7,370.4	7,370.4	반포동 1-26 일대	분구 중심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C-2	508.3	508.3	반포동 1-24 일대	주구 중심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C-3	545.4	545.4	반포동 1-55 일대	주구 중심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
			D-1	3,535.4	2,324.1	반포동 1-19 일대	문화 시설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분할 조성
			E-2	-	1,211.3	반포동 1-19 일대	공공 청사	50 이하	-	250 이하	-	5층 이하	D-1을 분할 조성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 746세대 (임대 148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85㎡ : 1,252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 초과 : 992세대											
심의완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반포대로변 : 6m 이격 - 신반포로19길변 : 6m 이격 - 북측 완충녹지변 : 6m 이격 - 그 외 :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3m 이격											
기타사항		▶ 공개공지 - 공개공지(침상형) 1개소 지정(위치지정) ▶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중앙부 동서방향 지상형 1개소 지정 - 대상지 북측 완충녹지변 지상형 1개소 지정 - 신반포로19길변 남북방향 지상형 1개소 지정 - 반포대로변 공공보행통로(지상·지하통로형) 1개소 지정 - 지정된 위치에서 30m 범위 내에서 폭 6m 이상의 직선형, 또는 곡선형으로 조성 ▶ 대지조성계획 - 단지 내부의 대지레벨은 +13.3m ~ +18.0m로 조성 - 대상지 서측 도로(신반포로19길) 경계부는 단지(+15.0m ~ +18.0m)와 도로(+11.6m ~ +13.3m)간의 단차에 따른 용벽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공개방시설의 미배치 구간은 대지레벨을 완만하게 조성											

※ 상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등 건축계획은 2019년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건 협의결과를 반영한 건축 계획이며,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조정될 수 있음

다) 용적률 산정 : 변경없음

구 분	산정내용				
	정비구역면적	획지(주택용지)면적	계획정비기반시설 토지	계획정비기반시설 건축물(환산부지면적)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토지이용계획	168,472.6㎡	119,799.8㎡	40,248.7㎡	3,164.7㎡	22,814.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토지+건축물)면적(40,248.7㎡ + 3,164.7㎡)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22,814.8㎡) = 20,598.6㎡ ▶ 순부담 비율 : 토지(12.70%) + 건축물(2.31%) = 15.01%				
건축물 기부채납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공공청사> - 토지 : 1,211.3㎡ - 연면적 : 5,041.1㎡ - 환산부지 면적 = 공사비(동청사(주민자치센터) : 2,000㎡ 초과 규모 적용) × 연면적 ÷ 부지가액 = 2,352,000(원/㎡) × 5,041.1㎡ ÷ 19,915,129(원/㎡) = 595.3㎡ <문화시설> - 토지 : 2,324.1㎡ - 연면적 : 7,100.5㎡ - 환산부지 면적 = 공사비(문화예술회관/문화집회시설 : 4,000~10,000㎡ 규모 적용) × 연면적 ÷ 부지가액 = 2,755,000(원/㎡) × 7,100.5㎡ ÷ 19,915,129(원/㎡) = 982.2㎡ • 지하도로1(지하공공보도시설)(반포대로-한강공원 연결) - 연면적 : 1,322.4㎡ - 환산부지 면적 = 공사비(2016년 문정컬처밸리 임시연결통로 공사비 참조) ÷ 부지가액 = 14,000,000(원/㎡) × 1,322.4㎡ ÷ 19,915,129(원/㎡) = 929.6㎡ • 지하도로2(지하공공보도시설)(신반포로19길-한강공원 연결) - 연면적 : 645.1㎡ - 환산부지면적 = 공사비(한강공원 나들목 낙천정 공사비 참조) ÷ 부지가액 = 14,000,000(원/㎡) × 645.1㎡ ÷ 19,915,129(원/㎡) = 453.5㎡ • 지하도로3(지하공공보도시설)(고투물 연결통로 개선) - 연면적 : 290.4㎡ - 환산부지 면적 = 공사비(2016년 문정컬처밸리 임시연결통로 공사비 참조) ÷ 부지가액 = 14,000,000(원/㎡) × 290.9㎡ ÷ 19,915,129(원/㎡) = 204.1㎡ 1) 환산부지면적(㎡) = $\frac{\text{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text{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2) 공공청사, 지역예술교육센터(문화시설) 공사비 : 2015년「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15] 적용 3) 부지가액(원/㎡) : 2016년 기준 공시지가 가중평균 2배 적용 (9,957,564.5원/㎡ × 2 = 19,915,129원/㎡) 4)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등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 기준(허용)용적률 = 230.0%(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적용) = 기준(허용)용적률(%) × (1+1.3×α) = 기준(허용)용적률(230.0%) × (1+1.3×0.171941) = 281.41%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95% 이하 (⇒ 건축계획(안)의 용적률 299.95%)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함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7)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 없음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가구	면적(㎡)	획지 구분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소 계	131,759.3	-	131,759.3	-
	획지 A-1	119,799.8	반포동 1-1 일대	119,799.8	주택용지
	획지 B-1	7,370.4	반포동 1-26 일대	7,370.4	분구중심
	획지 C-2	508.3	반포동 1-24 일대	508.3	주구중심
	획지 C-3	545.4	반포동 1-55 일대	545.4	주구중심
	획지 D-1	3,535.4	반포동 1-19 일대	3,535.4	공공청사, 문화시설 중복결정
변경	소 계	131,759.3	-	131,759.3	-
	획지 A-1	119,799.8	반포동 1-1 일대	119,799.8	주택용지
	획지 B-1	7,370.4	반포동 1-26 일대	7,370.4	분구중심
	획지 C-2	508.3	반포동 1-24 일대	508.3	주구중심
	획지 C-3	545.4	반포동 1-25 일대	545.4	주구중심
	획지 D-1	2,324.1	반포동 1-19 일대	2,324.1	문화시설
	획지 E-2	1,211.3	반포동 1-19 일대	1,211.3	공공청사

10)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연면적)
				전용	공급	
기정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로19길10 (반포동1-1)일원	119,799.8㎡	135	59.98㎡	82.48㎡	계획 : 11,134.8㎡ (기준 : 11,105.4㎡ 이상)
변경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로19길10 (반포동1-1)일원	119,799.8㎡	24	46.91㎡	62.73㎡	계획 : 11,466.4㎡ (기준 : 11,105.4㎡ 이상)
			124	59.94㎡	80.33㎡	

○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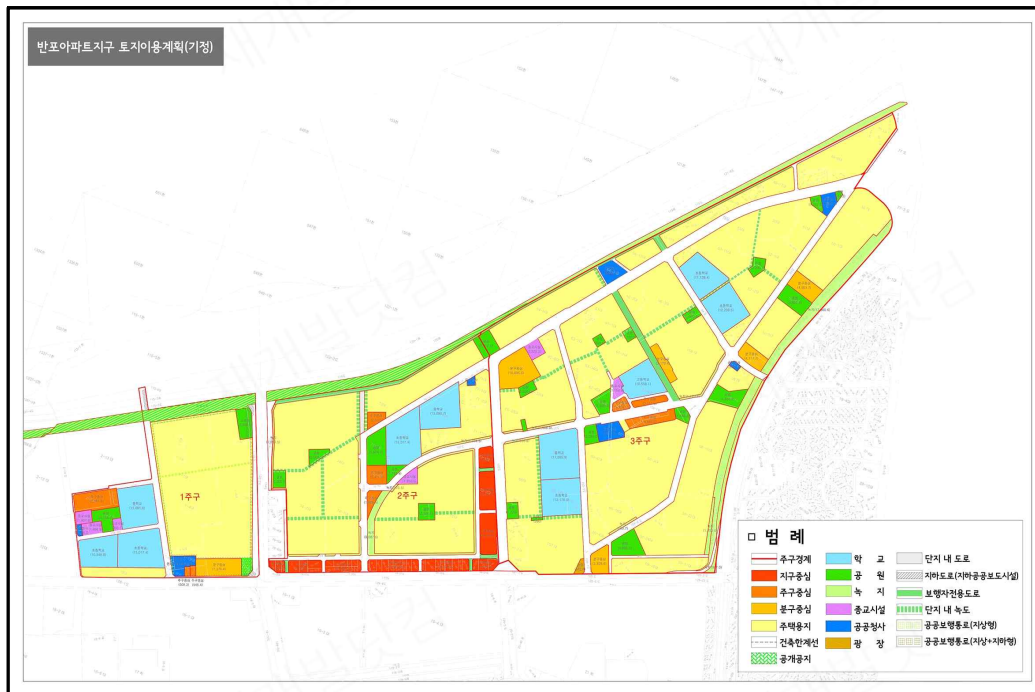
구분		산출근거	용적률(%) 면적(㎡)	비고
기준(허용)용적률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230.0%	
정비계획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1+1.3×α)	281.4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299.95%	
소형 주택 면적 산정	용적률 증가분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18.54%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제54조
	의무연면적	• 계획대지면적 × 증가용적률의 1/2 이상	11,105.4㎡이상	
재건축소형주택 확보 계획		• 계획 연면적 = (62.73㎡ × 24세대) + (80.33㎡ × 124세대) = 11,466.4㎡	11,466.4㎡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결정 도서 참조 (비치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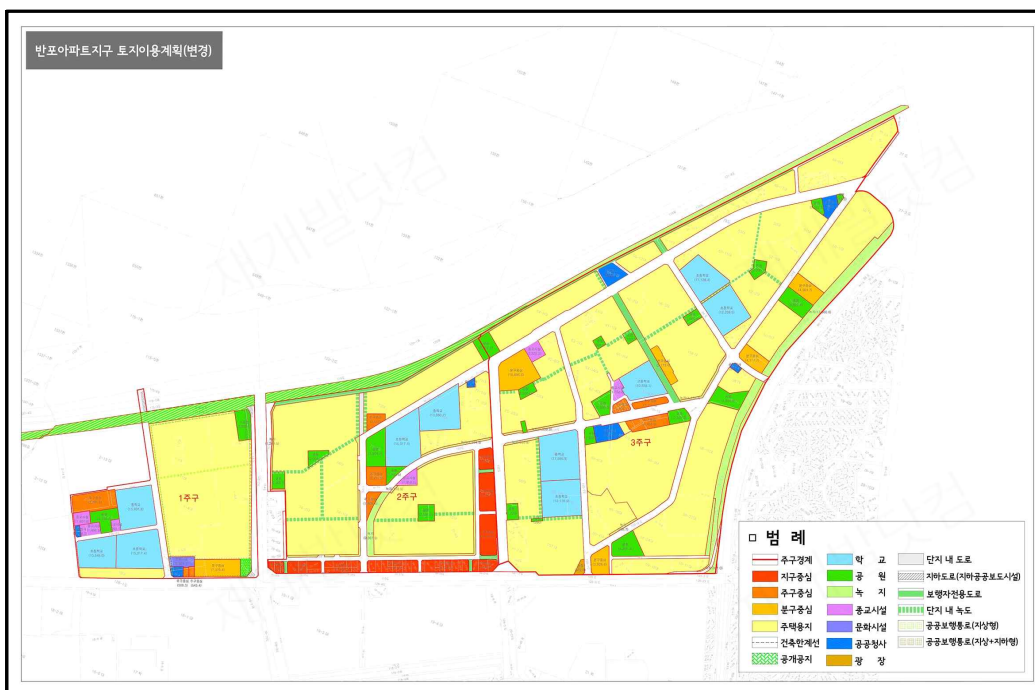
6.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초구 주거개선과(☎02-2155-734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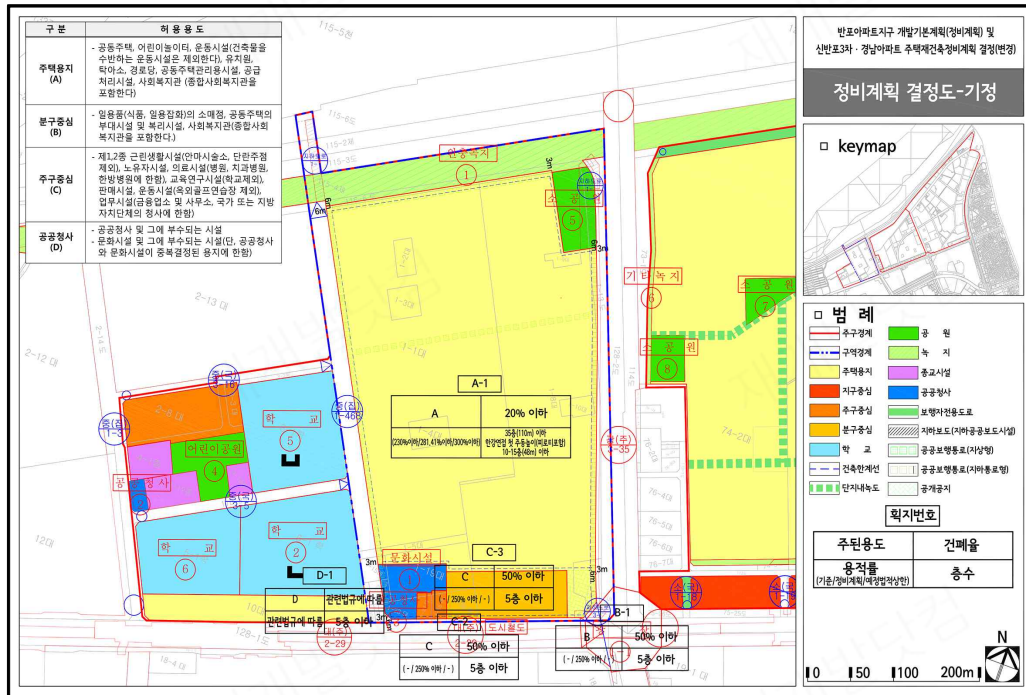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기정)]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결정(기정)도]



[정비계획결정(변경)도]

